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39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3.8.29)」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출산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기존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퍼센트 범위에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공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044-201-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